

제과점 사업자 절세 비법 두 가지

# 고용과 신용카드 매출 늘려 세금 감면

모든 사업자는 세금 공제나 감면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. 세금만 덜 내도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법. 이번 호에서는 제과점 경영자가 근로자 추가 고용이나 신용카드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본다. 진행\_정술이·사진\_전문식

제과업 경영 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세액을 감면 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. 국세청은 작년부터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거나 고용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세금을 대폭 절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또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꼼꼼히 따져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.

■ 근로자 추가 채용 = 1백만 원 소득세 절감

제과업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면 2004,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채용된 근로자 1명 당 1백만 원 씩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.

〈요건〉

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로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.

- 근로 계약 1년 미만인 자, 일용 근로자 등 계약직 근로자
-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및 직계 존·비속 친척
-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가 증명되지 않은 자

■ 근로 시간 단축에도 고용 유지 = 고용 유지 인원수 × 50만 원

고용 유지 인원수는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.

$$\text{㉠} - \text{㉡} \div \text{㉢} \times \text{㉣}$$

㉠ 고용유지제도 시행 전 1달 동안 상시근로자 1명 당 1일 평균 근로시간

㉡ 고용유지제도 시행 이후 1달 동안 상시근로자 1명 당 1일 평균 근로시간

㉢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

■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소득세 절감

신용카드 가맹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. 단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돼 세액 공제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잘 따져 볼 것.

※ 신용카드는 직불·선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다.

1 신용카드 수입에 따른 세액 공제

$$\text{종합소득 세액} \times \frac{\text{당해 신용카드 수입 금액}}{\text{총수입금액}} \times 5\%$$

2 초과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

$$\text{종합소득 세액} \times \frac{\text{당해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} - \text{전년도 신용카드 수입 금액}}{\text{총수입금액}} \times 50\%$$

Advice  
정동현



〈정동현세무사사무소〉를 운영중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펼치는 활동적인 세무사다. 현재 부동산중개업협회지 〈전국부동산뉴스〉와 치과정보지 〈덴포라인〉 등 다양한 잡지에서 세무관련 칼럼을 집필중이다.

